

#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9년 10월 9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  
(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21775호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조의4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다만,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2. 금융기관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등(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금융기관(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다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회사

가.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사모투자전문회사

제1조의5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그 밖에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

제1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6(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및 경영 관여 기준) 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금융기관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으로 은행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 ②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로서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에 관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수의 합계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

상인 경우 해당 주주

가. 해당 주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이사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된 이사의 수

나. 해당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해당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그 직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금융기관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그 이사의 수

2. 해당 금융기관과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자산운용 등 업무집행에 관한 은행장 또는 이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자

3. 그 밖에 해당 금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①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3.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동일인에 관한 사항
2. 사모투자전문회사등(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주주 또는 사원
  - 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무한책임사원의 출자액
3. 주식보유 또는 변동의 현황 및 사유에 관한 사항
4. 주식보유의 목적 및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 관여 여부에 관한 사  
항
5. 그 밖에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  
항

③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인은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해당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  
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이하 제4

항에서 같다)부터 5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  
로자의 날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  
다)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금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자는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3 본문 중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  
이 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금융  
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식의 보유 현황
3.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 계획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반기 재무제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5.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6.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⑤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국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주식을 취득하려는 금융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기관 주식의 보유에 대한 승인신청서의 서식, 승인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는 비금융주력자가 제1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금융기관의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 주식의 감자(減資),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따라 금융기관의 주주권이 변동되는 경우
  2. 비금융주력자가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유증(遺贈)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비금융주력자가 같은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4. 비금융주력자가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에서 긴급하게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③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부터 5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 ④ 법 제1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 ⑤ 법 제1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⑥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비금융주력자는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⑦ 비금융주력자의 금융기관 주식보유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금융기관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제1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는 경우로 한다.
- ② 법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업무집행사원이 법인이며, 해당 법인 설립 후 3년이 지났을 것

2.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법,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개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출자된 가액(해당 업무집행사원이 출자한 가액은 제외한다)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나. 1개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하여 그 자산 운용대상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주주 또는 사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출자하여 2개 이상의 투자대상기업에 실제 투자된 가액(해당 업무집행사원이 출자한 가액 중 투자된 가액은 제외한다)이 3천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자산운용 능력·경험 및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법 제15조의3제3항에서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 1.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정관
- 2.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
- 3.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주 및 사원 내역
- 4.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주 및 사원의 특수관계인의 내역
- 5. 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2항의 승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④ 법 제1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

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금융기관 주식보유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 제1호가목 및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말한다.

제11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 전환계획 이행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의3을 제11조의4로 하고,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① 법 제16조의2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체계를 말한다.

1.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할 것. 이 경우 해당 기준에는 의결권 행사기준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기금등이 보유한 금융기관의 주식 수가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등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금융기관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서 기금등이 보유한 주식 수 중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주식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주주로서 취득한 정보는 주주권 행사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 3.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의2제3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기금등이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라 정한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의4(종전의 제11조의3)의 제목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주기)”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1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 본문 중 “법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초과보유요건을”을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의 4제1항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도초과보유주주와”를 “한도초과보유주주등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8조제1항제5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제13조제1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24호 및 제27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금융지주회사법」
- 10. 「농업협동조합법」
- 11. 「수산업협동조합법」
- 12. 「외국환거래법」
-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27.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2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29. 「담보부사채신탁법」
- 30. 「전자금융거래법」
- 3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3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34. 「공사채등록법」
- 3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4조의4 및 제24조의5를 각각 제24조의5 및 제24조의6으로 하고,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법 제53조의2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③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주의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④ 법 제53조의2제4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여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은행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내지 제22호에 규정된 법령”을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제26호까지”를 “제3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5조 관련)

구 분	요 건
1.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제2호, 제3호, 제7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가 아닐 것 다. 승인신청하는 내용이 법 제35조의2제1항에 적합할 것 라. 승인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따라 금융기관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분	요건
	<p>1)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로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2)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p>
2.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인 경우	<p>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에 자산운용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p> <p>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3.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기금등인 경우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구분	요건
4.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7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p>가.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비금융회사로 한정한다)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주식취득 자금이 해당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의 자금일 것</p> <p>라.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5.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p>가. 주식취득 자금이 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닐 것</p> <p>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6.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p>가. 외국에서 은행업,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이거나 해당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일 것</p> <p>나.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p> <p>다. 해당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이 있을 것</p>

## 비고

1.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를 판정할 때에는 해당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2. 자본총액을 산정할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본총액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정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3.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금융회사 전체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기업집단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합 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하여 산정한 부채비율을 말한다.
4. 이 표 제6호를 적용하는 경우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외국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이 표 제6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 신청할 때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이 표 제6호 각 목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이 표 제7호를 적용하는 경우 이 표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구 분	요 건
	<p>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p>마.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7.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인 경우	<p>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가. 제1호의 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제2호의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다. 제3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라. 제4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마. 제5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바. 제6호의 외국인인 경우: 제4호가목(외국금융회사는 제외한다)·다목(외국금융회사는 제외한다)·라목 및 제6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제1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비금융주력자

나.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의 합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다만, 서로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사이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별표 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승인 요건(제9조제6항 관련)

구 분	요 건
1. 비금융주력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나. 승인신청하는 내용이 법 제35조의2제1항에 적합할 것

구 분	요 건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다. 승인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따라 금융기관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는 제외한다.
2. 비금융주력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이거나 기금등인 경우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비금융주력자가 제1호 및 제2호·제6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가.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비금융회사로 한정한다)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구 분	요 건
	<p>다. 주식취득 자금이 해당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의 자금일 것</p> <p>라.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4. 비금융주력자가 내국인인 개인인 경우	<p>가. 주식취득 자금이 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닐 것</p> <p>나.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5. 비금융주력자가 외국인인 경우	<p>가.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주식취득 자금이 해당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의 자금일 것</p> <p>다.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6.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인 경우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그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p> <p>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p> <p>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p>

비고

1.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를 판정할 때에는 해당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2. 자본총액을 산정할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본총액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정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3.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금융회사 전체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기업집단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합 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하여 산정한 부채비율을 말한다.
4. 이 표 제6호를 적용하는 경우 이 표 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비금융주력자
  - 나.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가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의 합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다만, 서로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사이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이유

비금융주력자 등에 대한 은행 주식 보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9784호, 2009. 6. 9. 공포, 10. 10. 시행)됨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금융주력자의 경영 관여의 요건(영 제1조의6)

- 1) 개정 법률에서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의 주식을 4퍼센트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임원 선임 등의 방법으로 은행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은행의 대주주로 규제를 받게 됨.
- 2) 이에 따라 은행의 임원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 이상으로 선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은행과 합의 등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은행장·임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경영 관여의 요건으로 구체화함.

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금융기관 주식보유 승인 요건(영 제10조 신설)

1)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사원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독립적·중립적으로 자산운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경험 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투자자들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산을 운용한 경험이 있을 것 등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요건을 구체화함.

다.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영 제11조의3 신설)

1) 개정 법률에서는 기금등의 경우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비금융주력자 규제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기준,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 요건을 구체화함. <법제처 제공>